

[별표 5] <개정 2018. 12. 11.>

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(제17조 관련)

1.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

시설 및 장비	기술능력
<p>가. 사무실</p> <p>나.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(용량 합계 3,600리터 이상). 다만,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(arm roll) 차량 1대 이상(용량 합계 5톤 이상)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다. 차고(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)</p>	<p>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</p>

2. 가축분뇨처리업

시설 및 장비	기술능력
<p>가. 사무실 및 실험실</p> <p>나. 가축분뇨 처리시설 1개소 이상</p> <p>다.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(組) 이상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) 화학적 산소요구량 3) 부유물질량 4) 총 질소(TN) 및 총 인(TP) 5) 대장균 군수(群數) 6)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)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8) 총고형물(TS) 및 휘발성 고형물(VS)의 양(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 9) 바이오가스의 성분(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 10)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(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 	<p>가.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</p> <p>나.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</p> <p>다.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,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정밀측정산업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</p>

3. 가축분뇨시설관리업

시설 및 장비	기술능력

<p>가. 사무실 및 실험실</p> <p>나.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) 부유물질량 3) 총 질소 및 총 인 4) 대장균 군수 5)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) 수소이온농도 7) 총고형물(TS) 및 휘발성 고형물(VS)의 양(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 8) 바이오가스의 성분(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 9)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(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 10) 퇴비·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(퇴비·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 	<p>가.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, 환경공학박사(수질 분야로 한정한다),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</p> <p>나. 수질환경산업기사, 화공기사, 축산기사,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. 다만, 퇴비·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축산기사,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
---	---

비고

1.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·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·장비(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)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,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.
 - 가.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
 - 나. 「하수도법」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
 - 다. 「하수도법」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
 - 라. 「하수도법」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
 - 마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
- 2의2.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서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

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3.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4. 위 표 제3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란의 가목에서 “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등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.
 - 가.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기술인력
 - 나.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
 - 다.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의 기술인력
 - 라.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
 - 마. 「하수도법」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기술인력
 - 바. 「하수도법」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
 - 사. 「하수도법」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
 - 아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
 - 자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
5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6.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7. 흡인식 차량, 암롤 차량,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흡인식 차량, 암롤 차량,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